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 - 123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

방송법제17조제3항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0. 30.

방송통신위원회

1. 재허가 심사 결과

○ 재허가 승인일 : 2012. 10. 25.

사업자명	대표자	방송구역	허가 만료일	심사 결과
백령중계유선방송	이선아	백령면 전역	2017.10.27.	재허가
대청중계유선방송	이선아	대청면 전역	2017.10.27.	재허가
동양케이블방송	남경섭	봉화군 재산면, 명호면, 봉성면 전역	2017.11.02.	재허가
이방유선방송	문홍기	이방면 전역	2017.11.03.	재허가
소안유선방송	이대화	소안면 일원	2017.11.19.	재허가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가. 접수기간 : 2012. 9. 25. 이후 2주간

나. 접수결과 : 없음

다. 반영여부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반영. 끝.